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 발의연월일: 2020. 6. 1.

발 의 자 : 남인순·강준현·고용진

김성주 · 김철민 · 맹성규

박광온 • 박홍근 • 송옥주

신동근 • 이용선 • 이정문

이학영 · 인재근 · 장경태

장혜영 • 진선미 • 천준호

의원(18인)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 및 가족해체 등의 신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민간 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을 확충하고 바우처 방식 도입을 통한 수요자 중심주의·선택권 강화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투자 기반을 마련하 고 인프라의 양적 성장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 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 하고 있고,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사회서비스 품질을 견인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따라 해당 국공립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민간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사회서비스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함(안 제1조).
- 나. 사회서비스,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함(안 제3조).
-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함(안 제4조).

- 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설립 시 그 타당성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를 마련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정관, 사업, 임직원 및 성과계약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27조까지).
- 마.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그 사무나 운영 및 수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바.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나 경영에 대해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각종 경영사항에 대해서 공시토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사.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지침 제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지도·감독,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 아.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2조).
- 자. 법률 시행 전 준비행위로서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차. 시·도지사가 법률안 시행 전에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사무를 수 행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하도록 함(안 부 칙 제8조).

법률 제 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2.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지원기관을 말한다.
 -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 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

- 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 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서비스원

- 제5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서비스원의 책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 공공성등과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그 관할 지역 내에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서비스원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①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설립 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정관) ①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원 사업 범위·유형 등의 적정성
 -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 3. 제21조에 따른 서비스원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사항
 - 4.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별운영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 5. 그 밖에 서비스원 운영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향상에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 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

- 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표
-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시민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 5. 시·도 및 시·도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 관련 공무원
- ③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사업) ①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 공기관 운영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등 각종 재가서비스의 제공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 6.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7.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8.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 9.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유형 등은 시·도지사가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③ 그 밖에 서비스원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제 1호 및 2호에 따른 사업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한다.
 - 1. 신규 설립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2.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보호 대상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의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 각종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4.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비스원에 사업을 우선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서비스원 관할 시·도지사는 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원의 사업 수탁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제2항 각 호 사업의 구체적 기준 등 우선 위탁의 범위, 우선 위탁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① 제10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제14조에 따른 서비스원 원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서비스원에 제14조에 따른 임원 후보자의 추천과 제15조에 따른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후보자 추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임원) ① 서비스원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제13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④ 원장 및 이사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이사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서비스원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

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수 있다. 다만, 원장 또는 감사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임원의 연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제14조제6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18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업무성과평가의 결과가 저조한 경우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에 대하여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원을

-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16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8조(이사회) ① 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하여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제19조(성과계약) ① 시·도지사와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한 차례만 수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

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직원의 채용) ① 서비스원은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 ② 서비스원은 직원을 채용할 때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 ④ 서비스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 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⑤ 서비스원은 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과 제3항에 따른 경력경

쟁시험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 해당 사업을 설립 또는 운영하였던 자가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였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시험 없이 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⑥ 서비스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관으로 정한다.
- 제21조(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①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정관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제1항에 따른 근거 범위 안에서 제31 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서비스원에 통보할 수 있다.
 - ④ 서비스원은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연수(硏修) 등 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제23조(회계연도) 서비스원의 회계연도는 시·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서비스원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서비스원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③ 서비스원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제출) ① 서비스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한 경우 서비스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회계법 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서비스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27조(재원) 서비스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3장 사회서비스지원단

- 제28조(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 등) ① 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있다.
 - ② 지원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국가는 지원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한다.
 - ④ 지원단은 국가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설립 및 사업운영 등과 관련한 기준

- 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지원단의 설립 및 등기,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지원단의 업무) 지원단은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회서비스 질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 1. 서비스원 설립. 조직관리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상담·자문 지원
 - 2. 제31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서비스원의 경영실 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 3.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표준운영지침 마련
 - 4. 서비스원 정책홍보,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 5.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및 관리,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
 - 6.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정책 수립지원,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조사·개발
 - 7.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서비스원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 8. 사회서비스 관련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0조(지원단의 운영 등)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

지,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제18조, 제22조부터 제25조(제5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비스원"은 "지원단"으로,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

- 제31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원장에 대하여 업무성과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서비스원에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을 받은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등에는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 질제고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와 제34조제1항의 표 준운영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결과에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서

- 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영평가등의 업무를 지원 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⑧ 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경영공시) ①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2. 전년도의 결산서
 - 3. 전년도 임원 및 직원 현황
 -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5. 제19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 6. 제31조에 따른 경영평가등의 결과
 - 7. 제25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 8.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7항 에 따라 지원단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비스원 경영평가의 결과

- 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운영지침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원에 적용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관계 부처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 2. 예산서 작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 3. 서비스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지침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원 개별운영지침(이하 "개별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운영지침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표준운영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영지침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5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원 및 지원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기록·처

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사회서비스원통합지원시스템(이하 "서비스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 ② 지원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다.
-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서비스원 또는 지원단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지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8조(권한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 또는 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9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설립·운영 등 지원단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등 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과 서비스원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단 및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원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0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서비스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 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단 및 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 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 제42조(과태료) ① 제3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과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시행 전에 제34 조제1항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단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

-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지원단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지원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원단의 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지원단에 파견할 수 있다.
- ⑧ 설립위원회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4조(서비스원의 설립준비 등) ①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이하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 사를 말한다)가 위원장이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서비스원 설립준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부칙 제6조 및 제7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단"은 "서비스원"으로, "설립위원회"는

-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제5조(사업의 우선위탁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호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부터 적용한다.
- 제6조(지원단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된 지원단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지원단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원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은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 제8조(종전 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서비스원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비스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원으로 보는 종전 법인(이하 "종전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서비스원에 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종전 법인의 임직원은 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은 종전 법인 임원 임기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 ④ 종전 법인의 권리·의무관계는 서비스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서비스원의 명의로 본다.
- ⑤ 종전 법인이 행한 행위는 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로, 종전 법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서비스원에 행한 행위로 본다.
- ⑥ 종전 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사업은 서비스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